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제정 2013. 07. 01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주)유비쿼스(이하 '당사'라 한다)의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협력업체”라 함은 제품 생산용 자재로 당사의 제작사양(도면, 시방서) 또는 승인도에 의하여 부품을 제작 납품하는 업체를 말한다.
2. “협력업체 선정”이라 함은 당사의 협력업체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3. “협력업체 운용”이라 함은 당사가 협력업체로 선정·등록된 업체에 대한 거래개시 기회부여, 등록, 취소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3조(협력업체 선정기준)

당사의 협력업체로 등록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당사가 요구하는 제품의 품질을 적합하게 제조 또는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필요한 면허, 인허가, 특허 등을 보유하여야 한다.
2. 당사의 협력업체 등록평가 결과가 6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단, 협력업체 등록평가지 현장실사를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
3. 당사가 요구하는 유효한 품질 및 환경인증서를 보유하여야 한다.
- TL9000, ISO9001, ISO14001

제4조(협력업체의 선정 절차 및 결과 공개)

1. 협력업체 선정 절차
 - ① 서류평가 : 기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회사소개서, 각종 면허 및 인허가증, 품질환경 인증서 등을 검토한다.
 - ② 현장실사 : 제조 및 QC공정을 확인하여 당사 요구품질에 적합성 여부 확인
 - ③ 협력업체 등록평가 : 협력업체 등록평가 결과서 작성
2. 협력업체 등록평가 결과 공개
협력업체 선정 절차에 의한 결과를 해당업체에 개별 공개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으로 개별 통지한다.

제5조(공정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협력업체로 선정·등록된 업체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개시를 위한 견적 참가 기회를 제한하거나, 차별 받지 않도록 한다.

제6조(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취소 기준

- 당사와의 구매계약 조항 및 당사자가 정한 특별관리약정을 위배한 경우
-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취소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제3자로부터 중요한 영업 재산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및 파산 또는 회사정리개시 신청이 있을 때
- 어음, 수표 등이 지급정지 되거나 거래정지 된 경우
- 화재 또는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 2개월 이상을 초과하는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타 회사로 합병 될 경우
- 발주품을 반복적으로 지연 납품하거나 확정된 발주의 이행을 임의로 거부하는 경우
- 당사 생산 기종이 중단되는 경우
- 당사의 주기적 또는 비주기적 평가 결과 지속 거래 기준에 부합하거나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 (품질, 납기, 가격, 협력도 중점평가)

2. 등록 취소 절차

협력업체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이메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며, 등록 해지된 업체는 통지 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중단된 거래선을 재등록 하고자 할 경우는 구매팀장이상의 승인하에 신규 협력업체 등록 기준에 준하여 등록을 할 수 있다.

제7조(가이드라인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하며 이에 대한 기준은 취업규칙, 인사관리규정 등 회사 내부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가이드라인은 2013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